

의안번호	2217630
의 퇴 인	백선희의원
회 답 일	2026.3.27.
추 계 번호	26E1450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의료비 세액공제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59조의4 (특별세액공제)	○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공제한도(연 700만원)를 폐지하고,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 － 제50조제1항제3호나목(거주자의 직계비속)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에 대한 공제비율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* * 자녀 1명 20%, 2명 25%, 3명 이상 30%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9조의4 (특별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, 세액공제율을 현행 15%에서 자녀 수에 따라 20~30%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과세기간 지출한 의료비(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)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, 현행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15%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됨
 - － 다만, 6세 이하 자녀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각각 15%, 20%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됨

- 개정안은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한도를 폐지하고, 자녀 수에 따라 20~30%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
 - 자녀 수별 세액공제율: 1명 20%, 2명 25%, 3명 이상 30%
- 이에 대한 세수변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신고자의 자녀 수 및 연령별 분포,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규모, 자녀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액, 결정세액 등 개인별 소득세 신고자료 필요
 -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등 다양한 공제대상자에 대해 적용되므로,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
 - 아울러 6세 이하 자녀 및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는 이미 한도 없이 각각 15%, 20%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, 연령 구간별(6세 이하/7세 이상) 자녀 수 및 해당 자녀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 등에 대한 세부 자료가 요구됨
- 그러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신고자의 연령구간별 자녀 수, 자녀별 의료비 지출 내역 등 개인 단위의 상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,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세수 추계가 곤란함
 - 국세청은 「국세통계연보」를 통해 총급여 구간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인원 및 공제금액 등 집계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으며, 자녀 의료비에 대한 공제금액 등 개인 단위 세부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지원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662	jwpark1209@assembly.go.kr